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9. 16 선고 2014가단20164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5. 8. 18.

판결 선고 2015. 9. 16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구 C 대 11.2m²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00. 11. 9.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 생활해 오다가, 2013. 7. 17. 피고를

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3년13357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신청(이하 '이 사건 조정신청'이라 한다)을 제기하였다.

나. 이 사건 조정신청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쌍방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서로 답변서 및 조정신청서 청구취지변경서 등을 주고받으면서 공방을 하였고,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. 9. 13. 열린 제2차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주된 내용으로 조정(이하 '이 사건 조정'이라 한다)이 성립되었다.

(1)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

(2)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구 D 대 216.2㎡ 토지 및 지상건물 등 2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3.

9. 13.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.

(3) 서울 성북구 E건물 제6호 부동산은 원고 소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으로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고, 안양시 동안구 F 대 896.7㎡ 및 그 지상 건물은 피고 소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으로 피고 소유임을 인정한다.

(4) 2013. 9. 13.자로 피고는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위 회사에 관계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피고 소유의 위 회사 소유 발행주식도 원고에게 양도하고, 위 회사의 제반권한 일체와 주식 등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괄양수하기로 한다.

(5)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,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.

다. 한편,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관계 중에 피고 명의로 2002. 3. 19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서울 중구 C 대 11.2㎡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는 이 사건 조정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조정신청서의 부동산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,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위 나.의 (2), (3)항의 재산분할 부동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제4호증의 8, 을 제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당사자의 주장

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(이 사건 조정 성립 당시 재산분할 대상에서

제외되었다는 주장 포함)이라고 주장하면서,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토지는 원·피고가 혼인 중에 상호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는 등 협력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로서 원·피고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될 당시 피고 명의의 부동산 중 원고가 분할받아 가야 할 부분에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향후 조정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, 재산분할 등 재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한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 성립 당시 원·피고 사이에 서로 공방을 거쳐 쌍방 명의로 되어 있던 상당수의 재산에 관하여 구체적인 재산분할 합의가 종국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경위나 그 내용, 또 통상적으로 이혼에 따른 부부간의 재산에 관한 분쟁은 재산분할 청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점,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조정 성립 당시 원·피고가 그 소유 관계 등을 서로 잘 알고 있던 부동산이었고,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조정 성립 당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조정 조항 중 '향후 조정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, 재산분할 등 재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' 합의에는 원·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조정 당시 재산분할에 구체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그 등기의 경위 및 재산 형성 과정 등에 관계없이 그 소유 명의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재산분할 합의를 하고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본안에 나아가 더 볼 필요 없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문세